



김해시복지재단

김해시 돌봄사업 종사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

김해시여성센터·김해시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경상남도 동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(이하 “협약당사자”라 한다.)는 김해시 돌봄사업 여성종사자들의 재취업 지원 및 돌봄노동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기관 간의 상호 효율적인 운영과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협약내용)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협력하기로 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- 가. 돌봄사업 여성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센터 간 연계 기회 확대
- 나. 돌봄사업 참여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
- 다. 상호시설 또는 연계기관 활용을 통한 다각적 협력
- 라.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분야

제3조(상호협약)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협약서의 목적에 비추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협약의 변경) 이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협약기간) 본 협약기간은 2022년 05월 26일~2024년 05월 25일까지하기로 한다.

제6조(효력)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.

2022년 05월 26일



김해시복지재단·김해시여성센터



김해시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

관 장 김 준 영



사회복지법인 장유대성복지재단



경 상 남 도 동 부 권
돌 봄 노 동 자 지 원 센 터

센터장 석 윤 미 (서명)